##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2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김남희·박지혜·이훈기

전진숙 · 김남근 · 백승아

김 윤 · 강준현 · 모경종

이기헌 • 조계원 • 오세희

위성곤 · 정동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 차별금지)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이동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등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설명 서류의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장애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lt;1 절≥</li> <li>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발장치 제공・판매 차별금지)</li> <li>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li> <li>② 이동통신사업자등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였도록 점자로 된 설명 서류의제공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요금제,서비스의조건등에 대하여 명확하게고지하여야한다.</li> </ul>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의 내용 및 장애인에게 명확하

<u>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 등 필</u> <u>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u> <u>정한다.</u>